

운영규정 개요

1.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하늘빛재가복지센터	기관기호	
기관동류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일자	2022년 5월 02일	설치 일자	2022년 5월 02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oholeesy77	메일ID	hoholeesy77@naver.com
연락처	021-487-9237	팩스	031-487-9236
사업장 주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7-7 201호		
교통정보	전철 4호선 중앙역 하차 건너 푸르지오 3차 아파트 건너편 JS양복점 뒤편 건물 버스 이용시 77, 71, 71-1, 62,번 푸르지오 3차 하차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가입보험사	청약일	보험기간	대표업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3년 7월 3일	2023년 7월 4일 24:00~ 2024년 7월 4일 24:00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 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
일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
다.

3. 총칙

경영이념과 비전	재가장기요양기관인 "하늘빛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믿음과 신뢰의 "경영이념"과 진심과 사랑이 담긴 봉사의 "행동방식"을 통하여 수급대상자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비전"을 담고 있다.
운영규정 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을 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3.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준수 의무	1.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재가이용 대상자 선정기준	1.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2.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로 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3.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동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매등급 판정자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2. 하늘빛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afedaumnet/D2DVisits)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지역사회 행사 후원 활동을 통하여 기관을 홍보한다. 3.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여우리 기관을 알려 모집한다 4.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상담 및 정확한 안내를 통하여 모집한다. 5. 친지, 지인, 수급자, 수급자 가족 등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6. 직원들이 본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5.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1.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회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게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 해야 될 사항이나 특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외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움 피부병 등) ③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중 때 ④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중때 ⑥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⑦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	--

6. 운영규정 총괄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방문요양】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6,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	일반(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감경(9%)	1,497	2,171	2,926	3,724	4,343	4,889	5,448	6,009
	감경(6%)	998	1,447	1,951	2,483	2,483	3,259	3,632	4,006
	기초(면제)	0	0	0	0	0	0	0	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아니함.
- 심야 가산 : 밤 12시부터 아침 06시 이전 이용시 가산 30%
- 휴일 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 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시 가산 50%

【방문목욕】

60분 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경우			47,670
구분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수급자(면제)
본인부담금	7,151	4,290	2,860	0